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통합)

2026. 7.

〈가이드라인 적용 안내사항〉

-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국고 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포함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 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 ◇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적용하고, 기타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산출 근거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목 차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3
I. 근거 및 적용범위	4
II. 가이드라인 주요 제·개정 연혁	4
III.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5
제2장 인건비 지원 기준	7
I.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8
II. 현원채정 및 최초직급 부여기준	15
III. 승진 임용	18
IV. 종사자 처우개선비	19
V.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20
VI. 행정사항	21
붙임	22
(별표1) 적용 사회복지시설	23
(별표2) 보수지급 기준표	25
(별표3) 시설별 현원표	별첨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 근거 및 적용범위 / 4

■ 가이드라인 주요 제·개정 연혁 / 4

■ 개정사유 및 주요개정 내용 / 5

I. 근거 및 적용범위

1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4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6조
 - ☞ 제4조(도지사의 책임), 제30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36조(보조·지원경비의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처우개선)

2 적용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별표1 참조)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을 모두 포함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II. 가이드라인 주요 제·개정 연혁

- (2013.2.)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 지침 마련
- (2015.4.)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 지방이양시설과 동일한 보수체계 및 직급체계로 개선
- (2018.1.) 지방이양시설 및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100% 동일화
- (2023.10.) 지방이양시설 및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지침 통합, 시간외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등 전면 개정(2024.1.1.시행)
- (2025. 1.) 가족수당 인상 및 자구 수정
- (2025. 7.) 신규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및 개정시기 규정 신설
- (2026. 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간외수당 확대
- (2026. 7.) 유급병가 신설,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연령 상한기준 조정, 시간외 근무수당 연 총량제 운영

Ⅲ.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2023. 10. 전면개정>

① 개정 사유

- 가이드라인 제정 후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에 대해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 필요
-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있는 인건비 지원 및 복지 수요에 대응

② 주요 개정내용

- (가이드라인 통합운영)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과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합 운영
- (보수지급 체계) 현행 연봉 개념의 가이드라인 급여체계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보수지급(기본급) 체계로 변경
- (시간외수당 지원) 현행 공무원 수준의 시간외수당 지원단가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단가로 상향 조정
- (지역아동센터 호봉 적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호봉제 미적용 내용 삭제
- (시설별 현원표) 법령 및 개별 중앙지침 적용에 따른 인력 증원, 사회복지사(채용자격)의 하위(5~6급)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

<2025. 1. 일부개정>

- (가족수당)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으로 가족수당 금액 인상
- (자구 수정) 전면개정('23.10)으로 인건비 지원기준이 현원표 변경됨에 따라 '정원'을 '현원'으로 수정하여 해석상의 혼돈 방지

<2025. 7. 일부개정>

- 신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 및 개정시기 명문화

<2025. 8. 일부개정, 2026.1.1. 시행>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간외수당 확대

<2026. 7. 1. 개정 및 시행>

- 유급병가 신설
- 조리원 인건비 보조금 연령 상한기준 조정(60 → 65세)
- 시간외 근무수당 연 총량제 운영

※ 개정사항

p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10	㉔ 인건비 지원방법 1) 인건비 지원기준 및 시기 ○ 봉급: 보수지급 기준표(별표2)에 의함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봉급표 작성 ○ 명절휴가비: 봉급의 120% -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의 60%씩 지급	㉔ 인건비 지원방법 1) 인건비 지원기준 및 시기 ○ 기본급: 보수지급 기준표(별표2)에 의함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보수지급 기준표 작성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기본급의 60%씩 지급	'2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명칭 변경 (봉급 → 기본급)
10	㉔ 인건비 지원방법 2)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 종사자 : 60세	㉔ 인건비 지원방법 2)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 종사자 : 60세 *조리원 65세	'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 사항 반영
12	㉕ 시간외 근무수당 1) 지원상한 ○ 사설장은 지급 제외, 지원 예산 범위 내 월 별 최대 인정 시간임 2) 시간외 수당 지원단가	㉕ 시간외 근무수당 1) 지급대상 및 지원상한 ○ 사설장은 지급 제외 2) 지급방법 ○ 연간 총 지급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집중 시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반기별 최대 지급시간은 연 총 지급시간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시간외 근무수당 총량제 도입 및 월 지원 상한 조정하여 탄력 운영

p	현행	개정	개정사유
		수 없음 ○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부담 3)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단가	
13 ~ 14	〈신설〉	㉔ 유급병가 1) 사용조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시설장이 판단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 필수 제출 ○ 입원 수술 등과 직접 관련된 통원 치료가 필요할 때 ※ 입원 및 수술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시설장의 승인 후 사용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 인정 7일 이상은 반드시 의사진단서* 첨부 *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 사용을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 필요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 일수에서 공제 3) 병가 일수의 계산 ○ 병가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	

p	현행	개정	개정사유
		○ 관공서 공휴일을 포함한 지속 평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일수에 관공서 공휴일을 산입 - (예시) 2026. 3. 1 ~ 3. 29까지 평가시 관공서 공휴일은 평가일수에서 제외 2026. 3. 1 ~ 3. 30까지 평가시 관공서 공휴일을 평가일수에 산입 ○ 평가는 “일” 단위로 사용(시간단위 사용 금지) 4) 인건비 지급 ○ 유급평가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성 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함 ○ 유급평가자의 급여는 보험차이에 따른 별도 급여보상체계를 우선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월 급여와 보상액의 차이를 실제 평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 보험 보상금이 평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5) 기타사항 ○ 본 규정만으로는 유급평가를 시행 또는 변경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설 복무 규정 등을 재개정한 후에 운영하여야 함 ○ 시설장은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승인하여야 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평가승인대상이지 않음 유의	
20	○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 - (장기) 본예산 편성시 - (수시) 법령 개정 등으로 인력 배치기준 변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한함	○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 - (장기) 본예산 편성시 - (수시) 법령 개정 등으로 인력 배치기준 변경 및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한함	수시개정사유 명확화

제2장 인건비 지원 기준

■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 10
■ 현원채정 및 최초직급 부여기준	/ 15
■ 승진 임용	/ 18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9
■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 20
■ 행정사항	/ 21

I.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법

- 인건비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현원 범위 내에서 지원
 -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 적용

1] 적용시설 (2026.7.1.기준)

- 총 243개소 (지방이양시설 120개소, 국비지원시설 123개소)
-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본 가이드라인 적용시설(별표1 참조)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2] 인건비 지원방법

1) 인건비 지원기준 및 시기 * 표의 항목 외 지원 불가

구 분		지원기준	지급시기	비 고
기본급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2)에 의함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보수지급 기준표 작성	매 월	'2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명칭 변경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 - 재직 중인 종사자(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기본급의 60%씩 지급	연2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수 당	가족수당	◦ 배우자: 40천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천원 ◦ 자녀: 첫째 50천원, 둘째 8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20천원 *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매 월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 별도 지원기준에 의함 * 시설장 지원 제외	매 월	
	위험수당	◦ 월 10만원 * 적용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노숙인시설	매 월	
유급병가		◦ 연 60일 범위 내	사유 발생시	
4대 보험		◦ 매년 4대 보험요율 적용 * 연도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상이	매 월	사업주부담분
퇴직적립금		◦ 총 급여의 12분의 1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 퇴직급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매 월	1년이상 근무자 지급, 1년미만 근무자 반환

※ 퇴직적립금 지급 제외 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

2)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 인건비 지원은 아래의 연령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
 - 시설장 : 65세 (단, 2002.1.1.현재 재직 중인 시설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지원)
 - 종사자 : 60세
 - * 조리원 65세
 -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인건비 지원 상한제에서 제외
- ※ 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적용

3] 직급체계

- 직급체계 : 9개 직급 (시설장, 사무국장, 1 ~ 7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촉탁의사

- * 관장·원장은 시설장 직급, 부장은 사무국장 직급, 과장은 1급 직급으로 간주
단, 사회(노인)복지관의 부장은 1급, 과장은 2급으로 봄

4] 보수지급 기준표

- “보수지급 기준표(별표2)”는 매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 2025년 보수지급 기준표(별표2)

직급	보수적용 기준 (보건복지부)	
시설장	(일반직) 관장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사무국장	(일반직) 사무국장	
1급	(일반직) 1급	
2급	(일반직) 2급	
3급	(일반직) 3급	
4급	(일반직) 4급	
5급	(일반직) 5급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관리직)
6급	(관리직) 3급	
7급	(관리직) 4급	2026년 보건복지부 촉탁의사 기본급 권고 기준
촉탁의사	(의료직) 촉탁의사	

5 호봉의 확정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 인정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적용

- (시설장) 사무국장(15년 이상) 또는 1급(15년 미만), (생활복지사) 4급
- (호봉적용) 2015년부터 근무 경력에 따라 1호봉씩 반영
- * 근무경력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에 따름
- ** 시행 시기 및 시행 방법 등은 해당 시설 소관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6 시간외 근무수당

1) 지급대상 및 지원상한

- 이용 및 생활시설 일반직 근무자 : 월 10시간
- 생활시설 교대근무자*: 월 30시간, 생활시설 조리원 : 월 25시간
- * 교대근무자: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생활시설 교대근무자, 긴급피난처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교대근무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야간근무자
- ※ 직접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 여성인권시설의 경우, 시설 소관부서에서 지원상한 내에서 별도계획에 의거 지원
- 시설장은 지급 제외

2) 지급방법

- 연간 총 지급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집중 시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다만, 반기별 최대 지급시간은 연 총지급시간의 5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
-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부담

3)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단가

- 지급대상: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지급액: 연장근로시간당[통상임금* $\times 1/209 \times 1.5$]
- 지급시기: 연장근로를 한 다음 달 보수 지급일(12월은 당월 지급)
- 지급방법: 지문인식이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 사전명령에 의한 결재를 득한 경우 인정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사후결재 득함)

* 통상임금: 보수지급 기준표(별표2) 기본급, 명절휴가비 등 (※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제외)

7 유급병가 ※국비 지원시설은 소관 중앙부처의 사업안내(지침) 우선 적용

1) 사용조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관련 서류(의사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시설장이 판단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 필수 제출
- 입원, 수술 등과 직접 관련된 통원치료가 필요할 때
※ 입원 및 수술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2)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시설장의 승인 후 사용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 인정, 7일 이상은 반드시 의사진단서* 첨부

*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 사용을 위한 명확한 내용 기재 필요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

3) 병가 일수의 계산

- 병가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 관공서 공휴일을 포함한 지속 병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가 일수에 관공서 공휴일을 산입
 - (예시) 2026. 8. 1. ~ 8. 29.까지 병가시 관공서 공휴일은 병가일수에서 제외
2026. 8. 1. ~ 8. 30.까지 병가시 관공서 공휴일을 병가일수에 산입
- 병가는 “일” 단위로 사용(시간단위 사용 금지)

4) 인건비 지급

- 유급병가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성 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함.
- 유급병가자의 급여는 보험처리에 따른 별도 급여보상체계를 우선 적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월 급여와 보상액의 차이를 실제 병가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못함.
 - 보험 보상금이 병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5) 기타사항

- 본 규정만으로는 유급병가를 시행 또는 변경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시설 복무규정 등을 제·개정 한 후에 운영하여야 함.
- 시설장은 병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승인하여야 함.
 -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병가 승인대상이 아님에 유의.

Ⅱ. 현원채정 및 최초 직급 부여기준

1 현원 채정

- 시설유형별, 직급별로 현원을 책정하고 현원범위에서 인건비 지원
(시설별 현원표 : 별표3)
 - 시설장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 현원은 5인 이상 시설만 인정
 - 시설장과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현원 동시 인정은 11인 이상 시설만 가능

◆ **(채용)**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시 **개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엄격히 준수**

* 채용 후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보수 적용을 위한 최초 직급 부여 기준과 채용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 **(최초직급)**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채용 후 시설 규모(종사자 수) 및 사회복지 시설 등 근무경력* 에 따라 최초 보수적용 직급 부여

* 근무경력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경력인정 범위

- 시설별 현원표는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시설 자체 부담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2 시설장

- **(5인 미만 시설)**
 - 시설장으로 최초직급을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에 따라 하위 직급인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5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시설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시설장	사무국장	1급	
시설장	2 ~ 4인	×	15년 이상	15년 미만	
	5 ~10인	15년 이상	7년~15년	7년 미만	
	11인 이상	20년 이상	10년~20년	10년 미만	

3] 사무국장

○ (11인 미만 시설)

- 사무국장으로 최초직급 부여할 수 없고,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자에 한해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11인 이상 시설)

- 근무경력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1급으로 최초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최초 직급 부여기준 (사무국장) >

직 위	종사자수	최초 직급		비 고
		사무국장	1급	
사무 국장	11인 미만	×	12년 이상	
	11인 이상	15년 이상	7년 이상 ~ 15년 미만	

※ 11인 이상 시설 사무국장 최초직급 부여의 경우, 개별지침에 사무국장 직책부여 명시된 경우 부여

4] 일반종사자

- 직책(직위)은 있으나 특정 직급 명시가 없는 종사자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급 부여하여 인건비 지원
 - 단,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는 일반직 등은 5급, 기능직 또는 관리직은 7급으로 최초 직급 부여

< 최초직급 부여기준 (직급 명시 없는 경우) >

최초직급	시설유형	직책 또는 직위
1급	사회(노인)복지관	부장
2급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인력
	사회(노인)복지관	과장
3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기사
	사회(노인)복지관	선임 사회복지사
4급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사회재활교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영양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작업지도원, 재활활동요원, 작업치료사, 수어통역사, 점역사, 다문화사례관리사, 건강가정사 등 유사직군, 상담원, 청소년상담사 등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언어치료사1급,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영양사, 약사, 의무기록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5급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생활보조교사, 재활활동보조요원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무원(서무·경리, 전산 등), 시설관리기사
6급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운전
7급	이용시설 또는 생활시설	노무, 청소, 취사, 열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경비원 등

※ 위 기준에 해당이 없는 종사자의 경우, 채용조건에 4급에 해당하는 자격 조건이 있는 경우(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4급 부여

※ 생활지도원: 개별지침에 생활지도원을 사회복지사 의무(필수) 채용 시 최초직급 4급 부여

※ 여성인권시설: 상담원의 최초직급 3급 적용하며, 5인 이상(상담원 3명 이상) 시설에 대해 2급 1명 현원 책정

Ⅲ. 승진 임용

- 승진 임용은 승진예정자가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근무한 경우, 현원 범위 내에서 가능(시설별 현원표로 관리)
 - * 단, 승진 임용 시, 시설 소관부서(예산부서 사전협의 必)에서 현원표의 직급 조정 후 승진 임용 절차 진행
- 상위직급 결원 시, 1직급 승진임용 원칙: 5급→4급, 4급→3급, 3급→2급, 2급→1급
 - * 결원 충원(승진 임용 등) 시 직급 조정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설 소관 부서 사전 협의 必
- 상위 직급으로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말함

<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

구 분	1급←2급	2급←3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일반직	5년	4년	3년	3년		
기능직				4년	3년	3년

※ 시설장, 사무국장은 시설(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름

Ⅳ. 종사자 처우개선비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인건비가 지원되는 종사자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지방이양시설, 국비지원시설 공통사항

※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예외 규정

①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이드라인 적용시설 종사자는 제외)로 정원 내 근무자이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 지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의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의해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상근 근무자에 한해 지원 * 상근 근무자란 1일 8시간, 20일간 근로한 자

② 지원기준

구 분	시설장	종 사 자		
		5년 미만	5 ~ 9년	10년 이상
지 원 액	150천원/월	170천원/월	180천원/월	200천원/월

- * 채용 월 다음 달부터 지원 (단,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
- * 근무연수는 해당 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으로 산정 (단, 동일법인 소속 시설 내에서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봄)

③ 정원 외 종사자 지원특례

- 노인요양시설 정원 외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특례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한하여 지원
 - * 제주도의회 권고('15.3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따라 반영

V. 인건비 지원 및 집행·정산

- 보수지급 기준표와 시설별로 종사자의 직급별 호봉별 인건비 총액 산정 후 국고지원 기준액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인건비 총액 : 기본급 + 명절휴가비 + 시간외·가족수당 + 4대 보험 + 퇴직적립금 등

- ※ 국고지원 기준액에서 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국고지원 기준 인건비 대비 차액 지방비 보전
- 국고지원시설에서 지방이양시설로 전환, 본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인건비 총액(시간외근무수당 제외)이 국고지원 시설에서 지급된 인건비 총액(시간외근무수당 제외)과 차이 발생 시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원(임금보전 차원)
-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지원
 - (적용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 ※ 2025.7.11.이전 설치신고된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 (지원절차)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최소 1년 이상의 시설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익년도 1월부터 예산 지원(사전 예산부서 협의 및 방침결정 필요)
 - (평가기준) 최소 1년 이상의 시설 운영실적 등(시설 환경, 조직·인력, 재정 및 회계, 이용자 권리, 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평가
 - ※ 시설 운영실적: 시설 설치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한 시점부터의 운영실적을 말함
- 가이드라인 개정 시기
 - (정기) 본예산 편성시
 - (수시) 법령 개정 등으로 인력 배치기준 변경 및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한함
 - ※ 2025.7.11. 이전 설치신고된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적용유예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시행
 - * 도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미준수시 예산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시행일: 2026. 7. 1.
- 본 지침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별도 문서로 보완하여 시행

부 록

■ (별표1) 적용 사회복지시설 / 23

■ (별표2) 보수지급 기준표 / 25

[별표 1] 적용 사회복지시설

1 지방이양시설

구 분	시설 유형		개소수	현 원
계			120	1,365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11	142
	노인여가복지센터(노인복지관)		2	26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3	26
	장애인복지관		7	221
	장애인주간이용시설		33	266
	장애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13
	지역사회	수어통역센터	1	14
	재활시설	점자도서관	1	6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	163
	정신재활시설		5	26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	7
생활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1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8	20
	장애인단기거주시설		7	81
	정신재활시설		1	2
	아동양육시설		5	219
	아동일시보호시설		1	9
	자립지원시설		1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23
	노숙인재활시설		2	45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2	27

2 국비지원시설

구 분	시설 유형	개소수	현 원
계		<u>123</u>	<u>564</u>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4	29
	성매매피해지원시설	3	14
	<u>성폭력피해보호시설</u>	2	<u>11</u>
	가정폭력보호시설	5	46
	노인보호전문기관	2	17
	아동보호전문기관	2	29
	지역아동센터	64	192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	<u>5</u>
	다함께돌봄센터	12	28
	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1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2	33
생활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1	6
	성폭력피해보호시설	3	18
	가정폭력보호시설	3	21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5
	학대피해아동쉼터	4	24
	공동생활가정	4	16
	청소년쉼터	6	47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6
	피해장애인쉼터	1	<u>11</u>

[별표 2]

2026년 道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기본급) 기준표

(단위 : 원 / 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2,980,600	2,814,200	2,683,200	2,477,200	2,360,100	2,281,800	2,232,300	2,225,400	2,197,000
2호봉	3,082,400	2,906,400	2,769,600	2,538,600	2,416,400	2,324,300	2,296,400	2,264,500	2,222,100
3호봉	3,186,800	3,011,200	2,870,500	2,606,200	2,485,000	2,366,500	2,335,000	2,308,600	2,261,100
4호봉	3,305,300	3,113,700	2,973,900	2,712,200	2,553,200	2,411,500	2,380,400	2,351,200	2,302,700
5호봉	3,440,900	3,230,900	3,095,900	2,824,500	2,621,900	2,475,400	2,439,000	2,399,600	2,343,500
6호봉	3,582,800	3,358,400	3,221,100	2,940,500	2,717,800	2,538,700	2,509,400	2,440,300	2,396,200
7호봉	3,724,600	3,485,400	3,345,900	3,061,500	2,815,600	2,633,500	2,606,600	2,524,700	2,435,800
8호봉	3,871,200	3,631,900	3,489,100	3,183,000	2,918,600	2,737,600	2,702,000	2,615,600	2,500,200
9호봉	4,018,900	3,778,400	3,637,600	3,301,000	3,037,600	2,835,500	2,782,200	2,689,400	2,579,300
10호봉	4,159,300	3,921,300	3,778,200	3,426,800	3,137,400	2,921,200	2,870,900	2,783,500	2,667,700
11호봉	4,310,200	4,051,900	3,915,700	3,542,900	3,237,200	2,997,200	2,940,100	2,851,500	2,736,000
12호봉	4,437,500	4,170,300	4,027,400	3,647,900	3,326,300	3,062,600	3,009,300	2,928,400	2,802,700
13호봉	4,556,000	4,275,500	4,132,400	3,739,600	3,401,300	3,125,400	3,063,800	2,996,600	2,872,800
14호봉	4,652,800	4,374,200	4,231,300	3,828,600	3,482,900	3,189,500	3,112,300	3,035,600	2,925,900
15호봉	4,750,300	4,468,200	4,326,700	3,914,000	3,561,300	3,255,800	3,171,500	3,070,000	2,972,100
16호봉	4,842,600	4,558,300	4,402,200	3,994,600	3,636,700	3,328,000	3,226,400	3,129,800	3,018,100
17호봉	4,929,200	4,634,500	4,481,600	4,071,400	3,707,600	3,399,600	3,278,900	3,188,400	3,076,100
18호봉	5,011,100	4,712,700	4,561,200	4,146,100	3,775,900	3,467,900	3,341,200	3,246,900	3,132,500
19호봉	5,087,700	4,787,300	4,632,100	4,212,000	3,839,400	3,529,400	3,402,400	3,296,500	3,192,200
20호봉	5,156,000	4,858,100	4,700,700	4,277,800	3,901,200	3,589,300	3,464,100	3,344,300	3,242,500
21호봉	5,223,300	4,921,800	4,767,900	4,338,700	3,964,000	3,643,100	3,519,000	3,401,500	3,299,100
22호봉	5,287,900	4,981,600	4,829,900	4,397,700	4,018,500	3,697,400	3,568,800	3,466,200	3,364,200
23호봉	5,348,200	5,041,500	4,888,800	4,453,600	4,070,900	3,747,100	3,626,000	3,533,200	3,428,600
24호봉	5,404,900	5,098,900	4,943,900	4,502,900	4,121,000	3,796,000	3,674,500	3,595,400	3,492,000
25호봉	5,460,400	5,151,500	4,998,800	4,551,900	4,174,400	3,842,500	3,725,400	3,652,800	3,555,900
26호봉	5,505,800	5,202,700	5,046,700	4,599,700	4,221,600	3,885,100	3,770,900	3,703,100	3,615,100
27호봉	5,552,100	5,246,800	5,091,700	4,640,000	4,260,000	3,921,800	3,807,600	3,752,400	3,664,400
28호봉	5,592,400	5,281,200	5,132,200	4,680,800	4,300,400	3,957,900	3,833,000	3,786,500	3,701,100
29호봉	5,623,300	5,313,200	5,166,100	4,718,300	4,337,900	3,992,800	3,853,700	3,824,700	3,739,500
30호봉	5,649,300	5,346,400	5,202,100	4,753,400	4,371,900	4,025,800	3,874,600	3,848,100	3,773,500
31호봉	-	5,359,900	5,235,300	4,785,000	4,405,000	4,057,900	3,898,000	3,887,700	3,799,800

* 명절휴가비, 수당(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미포함 * 촉탁의사 기본급 : 3,266,700원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보수지급 기준표 작성

